

2016년 취·창업 및 진로·직업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

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·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일환으로 「2016년 취·창업 및 진로·직업 체험 프로그램」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16. 10. 25.



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지역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 참여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

2. 기본방향

- 은퇴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취·창업 교육 제공
-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을 위한 진로·직업 체험 프로그램 및 가족단위 혹은 세대간 교육사업 제공

3. 사업기간 : 2016. 11월 ~ 2017. 2월

4. 사 업 비 : 총20,000천원(4개 사업지원)

5. 신청대상 : 전라북도 소재 평생교육기관 ※ <붙임1> 평생교육기관 참조

※ 단, 초·중·고등학교, 주민자치센터, 학원, 영리 사업체 제외

※ 지원제외 대상 사업

- 특정지역, 기관단체의 이익 및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
- 동일한 사업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

- 일회성 행사, 일회성 교육, 여행성 사업 또는 자체 내부 사업
- 기관·단체(동아리)의 정기총회, 행사 등 운영비 성격의 내부사업
- 단순 재위탁 등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
6. 지원범위

○ 지원규모 : 4개 기관 지원 (기관별 5,000천원 내외)

- 평가에 의한 프로그램 차등 지원
- 필요에 따라 신청기관 **자부담 가능**
- 신청기관은 1기관 1개 프로그램 신청

○ 지원조건

- 지원금은 본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강사비, 교재비, 운영비 등 직접경비로만 사용 가능
 - 아래 항목은 지원 제외
 - 강사비 : 해당 교육기관(단체) 내부 운영진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
 - 홍보비 : 국비 사용 불가, 기관 자부담 가능
 - 운영경비 : 직원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공공요금 등
 - 자산취득비 : 사무기기 등 자산성 물품 구입비 등
 - 업무추진비 : 급식비, 사례비, 접대비 등
 - 행사부대경비 : 경품비, 기념품비, 단체복, 단순 여행경비 등
- ※ 교육부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수

7. 공모내용 : 2개 유형

유형	내 용
고용복지연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여성인력개발센터,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, 학습상담 및 교육기회 제공 서비스 등 - 취·창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,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(예) 인력양성, 취·창업 준비과정 등 - 지역과 운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(예) 고용연계사업, 지역 기업참여 취업연계 과정 등
지역자원활용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, 문화시설, 기업 등 지역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진로·직업체험 사업, 가족단위 혹은 세대간 교육사업

8. 프로그램 기본요건 및 중점 사항

□ 프로그램 운영 요건

- 교육운영기간 : 2016. 11월 ~ 2017. 2월(4개월)
- 개강식·종강식을 제외하고 총 교육시간은 최소 16시간 이상으로 구성
- 프로그램 수강인원 25명 이상으로 설정

□ 유의사항

- 일자리 창출 연계 대책 및 학습결과를 활용할 연계기관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킬 것
- 결과활용 수요처(산업체, 교육기관 등과 연계 참여하거나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 등)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부여
- 사업 종료 후 성과결과 증빙서류 제출(취업확인서, 사회환원 활동확인서 등)
- 필요시 자부담 설정, 다만 미집행시 보조금 환수 조치

9. 제출서류

- 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 1부
 - 발신자: 신청기관장, 수신자 :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장
-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첨부파일) 1부
 - 기관(단체)장 직인을 날인한 원본 1부
 - 신청서 분량은 20페이지 이내(표지, 첨부 및 증빙자료 제외), 페이지 수 기입
 - 사업계획서 양식 내 작성안내 글은 삭제 후 제출
 - 제본, 스테플러 사용 자제 / 문구 집게, 클립 사용
-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
-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신뢰성 있는 실적증빙 자료(해당기관에 한함)
 - 강사, 프로그램, 기관의 신뢰성을 증빙하는 자료와 기타 자료 제시
- 사전 기업 채용 수요조사서, 기업협약서 등 사본 각 1부(해당기관에 한함)
 - ※ 사업 신청 서류는 e-mail(jblifelong@hanmail.net)로 별도 송부

10.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- 공고 및 신청기간 : 2016.10.25.(화) ~ 11.03.(목) 18:00까지, 도착분에 한함
- 신청서 양식
 - 전라북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(<http://jbdamoa.jeonbuk.go.kr>) 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buk.go.kr>), 전북연구원(<http://jthink.kr>)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 (등기)
 -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 - 제출처 : (55068)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 3층
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담당자 앞
 - 방문접수는 근무일 정규 근무시간 내(월~금, 09:00~18:00)에 한함
- 문 의 처 :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 ☎ 063-280-7184

11.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

- 1차 서류 심사
 - 심사방법 :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한 서면심사 실시
 - 심사내용 : 지원 자격, 사업비 적정여부, 중복지원여부 확인 등
- 2차 전문가 심사
 - 심사방법 :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면심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 - 심사내용 :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, 사업주체 역량,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, 성과관리, 예산사용의 적절성 등
- 선정결과 발표 : 2016. 11. 07.(월) 예정
 - 선정 결과는 선정기관 개별통지 및 전라북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홈페이지 게시

12. 사업 추진 일정

사업공고 및 접수	심사 및 결과발표	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정계획 제출	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	사업운영 및 중간점검	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(기관)	사업평가
'16.10.25. ~ 11.03.	'16.11.04. ~ 11.07.	'16.11.08. ~ 11.10.	'16.11.11. 예정	'16.11.11 ~ '17.02.10	'17.02.17. 까지	'17.02.28.

13. 기타사항

- 신청한 프로그램이 지원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프로그램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.
-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생교육기관은 결정 통보 후 3일 이내로 실행계획서를 제출·승인 받아야 하며 보조금 신청은 정산용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여야 함
-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소 준비, 강사확보, 학습자모집 및 출석관리, 홍보,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의 책임 하에 수행함
- 평생교육기관은 프로그램 중간점검 및 운영현황 현지조사 등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7일 이내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프로그램 수강생 등록을 통해 운영하여야 하며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
-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신청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 등 공모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평생교육기관 유형

I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유형

기관유형	근거법령	기관 정의
국가 및 지자체 (평생학습추진기구)	평생교육법 제5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자체, 교육청 ■ 평생학습도시(전담기관)
시·도평생교육진흥 원	평생교육법 제20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,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
시·군·구평생학습관	평생교육법 제21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
학교의 평생교육	평생교육법 제29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·시행
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	평생교육법 제29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생·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
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	평생교육법 제31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과정 및 시설 등이 초·중·고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초·중·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
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	평생교육법 제32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	평생교육법 제33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·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
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	평생교육법 제34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·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
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	평생교육법 제3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·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
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	평생교육법 제37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간/주간신문·통신 또는 월간 잡지인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시설
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	평생교육법 제38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·인력개발 사업을 진흥·육성하는 평생교육시설

II

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유형

기관유형	근거법령	기관 정의
공무원 연수기관	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교육 훈련하는 전문 교육훈련기관
공공직업훈련 시설	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 제2조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
국 방 부 (육, 해, 공군)	군인복무규율 제2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무생활·근무·교육훈련 기타 병영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운영하는 시설
국 악 원	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
노인관련시설	노인복지법 제23조의 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 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회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다문화가족 지원센터	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및 단체
도서관	도서관법 제2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서관 자료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조사·연구·학습·교양·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
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	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·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·단체로서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것
문화의집	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
미술관 박물관	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·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시설
보 건 소	지역보건법 제9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자체 내의 국민건강증진, 보건교육, 구강건강, 영양관리사업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

아동복지시설	아동복지법 제1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아동직업훈련시설 :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■ 아동복지관 :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■ 지역아동센터 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장애인복지시설	장애인복지법 제20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 생활시설 :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·치료·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 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료재활시설·체육시설·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■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: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·상담·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하여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
전수회관	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·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
종합사회복지관	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비영리민간단체	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
비영리법인	민법32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(재단)법인

성폭력상담소	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가 및 지자체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해 설치·운영하는 시설
여성관련시설 (여성인력개발 센터)	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
자원봉사센터	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5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원봉사활동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·법인·단체
주민자치센터	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·면·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
지정직업훈련 기관	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제3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·설치된 직업훈련원·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
평생직업교육 학원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
지방문화원	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
청소년관련시 설	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청소년수련관 :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 ■ 청소년문화의집 :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
청소년단체	청소년기본법 제48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「청소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

심사표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
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	○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타당성	5
사업주체 역량	○ 기관·단체의 책임성 및 전문성, 최근활동 실적, 전담인력의 전문성 ○ 교육환경 및 학습자 확보 역량 ○ 유사사업 실적	20
사업내용 및 추진방법	○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○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○ 프로그램 수행능력 및 효과성 ○ 사업의 독창성 및 창의성	30
성과관리	○ 지역사회 예상 파급 효과 ○ 지역 연계 및 인력 활용계획의 내실성 ○ 사후관리의 적극성 및 체계성 ○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수	35
예산사용의 적절성	○ 효율적인 사업비의 분배 및 계획, 사용의 적절성	10
총 계		100